

Ⅱ. 서비스 규정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본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0조 (이용계약체결 절차)

- ①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때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 등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 ②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혹은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 ㉡ 계약 일자 및 계약기간
 - ㉢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 ㉤ 서비스 제공 중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관련 내용
 - ㉥ 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11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혹은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②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센터의 기본 책무)

-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 ②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때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상자의 책임이행)

- ① 대상자(혹은 보호자) 등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④ 대상자(혹은 보호자) 등은 대상자 가정 내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그로 인한 부상 등 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본 운영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 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 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의무